

공 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-259호

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-1340호(2025. 7. 31.)로 공람공고한 우리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5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6. 2. 5. ~ 2026. 3. 6. (30일 이상)
2. 공람장소 :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(은평구 은평로 195 4층, ☎02-351-7457)
3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으로 제출
4. 공람내용 : 아래와 같음

가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(변경)

- 1) 정비사업의 명칭 :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
- 2) 정비구역 지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신설	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	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	-	증) 38,758	38,758	-

■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

구 분	위 치	내 용	사 유	비 고
신설	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	정비구역 지 정	노후·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, 정비기반시설 정비,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	—

3)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 분	명 칭	면적(㎡)	비율(%)	비 고
합 계		38,758	100.0	—
정비 기반 시설 등	소 계	5,313	13.7	—
	도 로	5,313	13.7	—
획 지		33,445	86.3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)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38,758	—	38,758	100.0	—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38,758	감) 38,758	—	—	—
	제2종일반주거지역	—	증) 38,758	38,758	100.0	—

■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 사유
		기 정	변 경			
—	응암동 101번지 일대	제2종일반 주거지역 (7층이하)	제2종일반 주거지역	38,758	300% 이하	다수의 토지등소유자 및 순부담률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유도

나) 용도지구 결정 조서 : 해당사항 없음 (변경없음)

5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가) 교통시설 (변경)

■ 도로 총괄표 (변경)

유별	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기정	14	2,378 (1,062)	23,246 (4,485)	1	1,072	16,422	3	296 (52)	2,396 (57)	10	1,010	4,428
	변경	4	1,687 (761)	24,990 (5,313)	3	1,498 (572)	22,406 (4,278)	-	-	-	1	189	2,584 (1,035)
중로	기정	1	1,072	16,422	1	1,072	16,422	-	-	-	-	-	-
	변경	2	1,261 (337)	19,696 (1,709)	1	1,072 (148)	17,112 (674)	-	-	-	1	189	2,584 (1,035)
소로	기정	13	1,306 (1,062)	6,824 (4,485)	-	-	-	3	296 (52)	2,396 (57)	10	1,010	4,428
	변경	2	426 (424)	5,294 (3,604)	2	426 (424)	5,294 (3,604)	-	-	-	-	-	-

※ ()는 사업대상지 내 구간에 해당함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0 (-)	집산 도로	1,072 (-)	응암동 84-14	응암동 648-3	일반 도로	-	2007.08.16	대상지 외
변경	중로	1	1	20 (4.5)	집산 도로	1,072 (148)	응암동 84-14 (응암동 194-17)	응암동 648-3 (응암동 194-17)	일반 도로	-	2007.08.16	
기정	소로	2	A	7.5 (-)	국지 도로	195 (-)	응암동 98-70	응암동 102-65	일반 도로	-		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 역
변경	중로	3	A	12.5 (5.5)	국지 도로	189 (189)	응암동 98-70	응암동 102-65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2	B	7.5 (1.5)	국지 도로	57 (52)	응암동 102-65	응암동 102-65	일반 도로	-		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A	5.2~5.8	국지 도로	184	응암동 101-9 7	응암동 98-70	일반 도로	-		
변경	소로	1	A	11~13.5	국지 도로	215	응암동 194-2 3	응암동 102-1	일반 도로	-		
기정	소로	2	5	8 (-)	국지 도로	44 (-)	응암동 196-1 1	응암동 195-8 7	일반 도로	-	1969.01.18	대상지 외
변경	소로	1	B	11 (5)	국지 도로	211 (209)	응암동 195-6 7	응암동 102-6 5	일반 도로	-	1969.01.18	
폐지	소로	3	B	6	국지 도로	178	응암동 102-6 5	응암동 98-70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C	4	국지 도로	170	응암동 101-2 7	응암동 101-2 7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D	3	국지 도로	75	응암동 101-2 7	응암동 101-2 7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E	3	국지 도로	74	응암동 102-2 9	응암동 102-2 9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F	3	국지 도로	69	응암동 102-4 1	응암동 102-7 6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G	3	국지 도로	69	응암동 102-3 7	응암동 102-7 2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H	4	국지 도로	71	응암동 102-4 8	응암동 102-4 8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I	3	국지 도로	72	응암동 102-5 0	응암동 102-5 0	일반 도로	-		
폐지	소로	3	66	6	국지 도로	48	응암동 194-2 3	응암동 100-4 0	일반 도로	-	1990.10.31	

※ ()는 사업대상지 내 구간에 해당함

※ 소로 2-A,B 및 소로3-A,B,C,D,E,F,G,H,I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, 번호 및 기·종점 등은 임의로 작성하였음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1-1	중로1-1	• 대상지 내 일부구간 폭원 및 연장 변경 - B = 20m → 20m, 변경없음 (0m → 4.5m, 증 4.5m) - L = 1,072m → 1,072m, 변경없음 (0m → 148m, 증 148m)	•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상지 접근성 개선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폭
소로2-A	중로3-A	• 폭원 및 연장 변경 - B = 7.5m → 12.5m, 증) 5m (0m → 5.5m, 증 5.5m) - L = 195m → 189m, 감) 6m (0m → 189m, 증 189m)	•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상지 접근성 개선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폭
소로2-B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A	소로1-A	• 폭원 및 연장 변경 - B = 5.2~5.8m → 11~13.5m, 증) 5.8~7.7m - L = 184m → 215m, 증) 31m	•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상지 접근성 개선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폭
소로2-5	소로1-B	• 폭원 및 연장 변경 - B = 8m → 11m, 증) 3m (0m → m, 증 5m) - L = 44m → 211m, 증) 167m (0m → 209m, 증 209m)	•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상지 접근성 개선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폭
소로3-B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C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D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E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F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G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H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I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소로3-6 6	-	• 폐지	•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현황도로 폐지

※ ()는 사업대상지 내 구간에 해당함

6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(변경)

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법 정		계획면적 (㎡)	
			기 준	면적(㎡)		
주민공 동시설	합계	－	600세대 이상~1000세대 미만 (999세대x2.5㎡x1.25)	3,121.88	4,350.00	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적용
	경로당	획지	500세대 이상~1000세대 미만 (330㎡이상)	330.00	360.00	
	어린이집	획지	500세대 이상~1000세대 미만 (330㎡이상)	330.00	360.00	
	작은도서관	획지	500세대 이상~1000세대 미만 (158㎡이상)	158.00	180.00	
	돌봄지원센터	획지	전용66㎡이상	－	－	
	주민공동시설	획지	－	－	1,000.00	－
	주민운동시설	획지	－	－	750.00	－
	주민운동시설	획지	－	－	300.00	옥외시설
	어린이놀이터	획지	300세대 이상~1000세대 미만 (200㎡+(999세대x1㎡))	1,199.00	1,400.00	옥외시설
경비실		획지	－	－	30.00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관리사무소		획지	10㎡+(999－50)x0.05㎡	57.45	110.00	

※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,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

※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 될 수 있음

7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구 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(동)					비고
	명 칭	면 적 (m ²)	명 칭	면 적 (m ²)		계	존 치	개 수	철거후 신 축	철 거 이 주	
신설	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	38,758	획지	33,445	응암동 101번지 일대	193	-	-	193	-	-

가) 건축시설계획 (변경)

[illegible]

심의완화 사항	●기준용적률 20% 완화(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) -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190% + 60㎡이하 소형주택 확보시 20% 완화 = 210% ●허용용적률 37.8% 완화(BF인증, 녹색건축물 등 인센티브,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) - 기준용적률 210% +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.0% X 보정계수 1.89 = 247.8% ●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 완화 - 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 250% X 1.2 = 300%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●건축한계선 - 백련산로, 응암로34가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- 은평로10길, 응암로34가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격(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 지정) ●통경축 확보구간 - 백련산 주 조망축에 위치한 동서간 통경축 확보구간(15m) 설정 (통경축의 폭원은 12m 이상으로 하며, 그 위치는 통경축 확보구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)

나)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(변경)

구 분	산정내용					
토지이용계획	사업면적	대지면적	신설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건축물 환산부지 면적
	38,758㎡	33,445㎡	5,313㎡	1,562㎡	3,751㎡	—
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(순부담)	•의무 순부담률 : 0% •신설 정비기반시설 -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$= 5,313\text{㎡} - 1,562\text{㎡} - 3,751\text{㎡} = 0\text{㎡}$					
기준 용적률	•210% -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190% + 60㎡ 이하 소형주택 확보 시 20% 완화 적용					
허용 용적률	•247.8% - 기준용적률 210% +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.0% X 보정계수 1.89 적용 *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: 열린단지 5% + BF인증(일반등급) 3% + 돌봄시설(어린이집, 실내놀이터) 2.5% + 친환경 건축물(우수등급) 1.5% + 방재안전 5% + 층간소음 해소(2등급) 3% = 20%					
법적상한 용적률	•250% - 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 용적률					
법적상한 초과 용적률	•300% 이하 - 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 용적률 250% X 1.2 = 300% 이하					
건축계획 용적률	•299.92% - 건축계획(안)					

9) 임대주택 및 소형·국민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(변경)

가)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계획 (변경)

구 분	확보기준	확보내용	비고
1	•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[도시정비법 제54조1항에 따른 증가된 세대수 제외]의 15% 또는 연면적의 10% 이상	• $82,880\text{㎡} \times 10\%$ $= 8,288\text{㎡}(\text{기준}) \leq 8,296\text{㎡}(\text{확보})$	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93 호]
2	•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[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]의 30% 이상 주거 전용면적 40㎡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	• $116\text{세대} \times 30\%$ $= 35\text{세대}(\text{기준}) \leq 52\text{세대}(\text{확보})$	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93 호] [기준2 또는 기준3]
3	•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[도시정비법 제54조1항에 따른 증가된 세대수 제외] 이상 주거전용면적 40㎡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	• $999\text{세대} \times 5\%$ $= 50\text{세대}(\text{기준}) \leq 52\text{세대}(\text{확보})$	

나) 국민주택 임대 계획 (변경)

구분		내용
정비계획 용적률		• 247.8%
법적상한초과 용적률		• 300% (건축계획 용적률 : 299.92%)
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	용적률 초과분	• 52.12% (299.92% - 247.8%)
	초과 용적률의 60%	• 31.27% (52.12% × 60%)
	초과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	• 10,459㎡ 이상 (확지면적 33,445㎡ × 31.27%)
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규모		• 계획 97세대, 연면적 10,463㎡ = (전용39형)59.19㎡ × 3세대 + (전용51형)72.45㎡ × 1세대 + (전용59형)82.55㎡ × 8세대 + (전용84형)112.38㎡ × 85세대 = 10,463㎡ (≥ 10,459㎡)

다)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 (변경)

구분	확보기준	확보내용
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	•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(또는 전체 연면적)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(또는 연면적)의 40% 이상을 지분형주택, 공공임대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·공급	• (999세대 - 580세대) × 40% = 168세대(기준) ≤ 213세대(확보)
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	•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은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20% 이상 확보	• 999세대 × 20% = 200세대(기준) ≤ 213세대(확보)

라) 소형주택 계획 (변경)

구분		내용
20% 상향 전		• 기준용적률 : 210% • 정비계획용적률 : 227.8%
20% 상향 후		• 기준용적률 : 230% • 정비계획용적률 : 247.8%
20% 상향에 따른 증가분	늘어난 용적률	• 20.0% (247.8% - 227.8%)
	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	• 6,689㎡ (획지면적 33,445㎡ × 20.0%)
60㎡ 이하 주택건설 규모		• 계획 508세대, 연면적 39,441㎡ = (전용39형)59.19㎡ × 83세대 + (전용51형)72.45㎡ × 55세대 + (전용59형)82.55㎡ × 370세대 = 39,441㎡ (≥ 6,689㎡)

10)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(변경)

추정 비례율	-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수입 - 사업비) / 종전자산가액 × 100% - 추정비례율 = 95.94% = (778,630,643천원 - 493,759,630천원 / 296,914,623천원 × 100% - 총수입 추정액 = 778,630,643천원 - 총지출 추정액 = 493,759,630천원 - 종전자산 추정 총액 = 296,914,623천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전자산 추정액 및 산출방법	- 토지평가 :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시장가치와의 차이는 인근 평가사례 및 매매사례 등 가격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정률로 보정하여 적용 - 건물평가 : 이용상황별, 구조별 건물의 재조달원가 및 경과연수를 고려하였으며, 내용연수 만료된 건물은 관찰감가를 적용 - 집합건물평가 : 각 집합건물의 원가적 측면과 경과연수, 이용상황, 구조, 위치에 따른 비교 가능성 있는 적절한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정 분담금 산출	추정분담금 산정방식 추정분담금 =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정액 - (종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) (단위: 천원) <table> <tr> <th>유형구분</th><th>물건 (평균값)</th><th>종전자산 추산액</th><th>권리가액 (비례율 95.94%)</th><th>공급면 적 (㎡)</th><th>토지등소유 자 분양가</th><th>분담금 [환급(-),분담(+)]</th></tr> <tr> <td rowspan="4">단독주택 (다가구 포함)</td><td rowspan="4">토지: 128㎡ 건물: 187㎡</td><td rowspan="4">1,087,957</td><td rowspan="4">1,043,786</td><td>51</td><td>619,770</td><td>-424,016</td></tr> <tr> <td>59</td><td>707,500</td><td>-336,286</td></tr> <tr> <td>84</td><td>894,960</td><td>-148,826</td></tr> <tr> <td>114</td><td>1,135,380</td><td>+91,594</td></tr> <tr> <td rowspan="4">공동주택 (연립,다세 대,아파트 포함)</td><td rowspan="4">응암로 00길 00 000호</td><td rowspan="4">324,961</td><td rowspan="4">311,768</td><td>51</td><td>619,770</td><td>+308,002</td></tr> <tr> <td>59</td><td>707,500</td><td>+395,732</td></tr> <tr> <td>84</td><td>894,960</td><td>+583,192</td></tr> <tr> <td>114</td><td>1,135,380</td><td>+823,612</td></tr> </table>						유형구분	물건 (평균값)	종전자산 추산액	권리가액 (비례율 95.94%)	공급면 적 (㎡)	토지등소유 자 분양가	분담금 [환급(-),분담(+)]	단독주택 (다가구 포함)	토지: 128㎡ 건물: 187㎡	1,087,957	1,043,786	51	619,770	-424,016	59	707,500	-336,286	84	894,960	-148,826	114	1,135,380	+91,594	공동주택 (연립,다세 대,아파트 포함)	응암로 00길 00 000호	324,961	311,768	51	619,770	+308,002	59	707,500	+395,732	84	894,960	+583,192	114	1,135,380	+823,612
유형구분	물건 (평균값)	종전자산 추산액	권리가액 (비례율 95.94%)	공급면 적 (㎡)	토지등소유 자 분양가	분담금 [환급(-),분담(+)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독주택 (다가구 포함)	토지: 128㎡ 건물: 187㎡	1,087,957	1,043,786	51	619,770	-424,0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59	707,500	-336,2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84	894,960	-148,8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114	1,135,380	+91,5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동주택 (연립,다세 대,아파트 포함)	응암로 00길 00 000호	324,961	311,768	51	619,770	+308,0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59	707,500	+395,7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84	894,960	+583,19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114	1,135,380	+823,6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	-	증) 38,758	38,758	-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 분	위 치	결정내용	결정사유
신설	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	-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A : 38,758㎡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응암동 101번지 일대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(지구단위계획구역)으로 지정함

다. 관계 도서 : 생략(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비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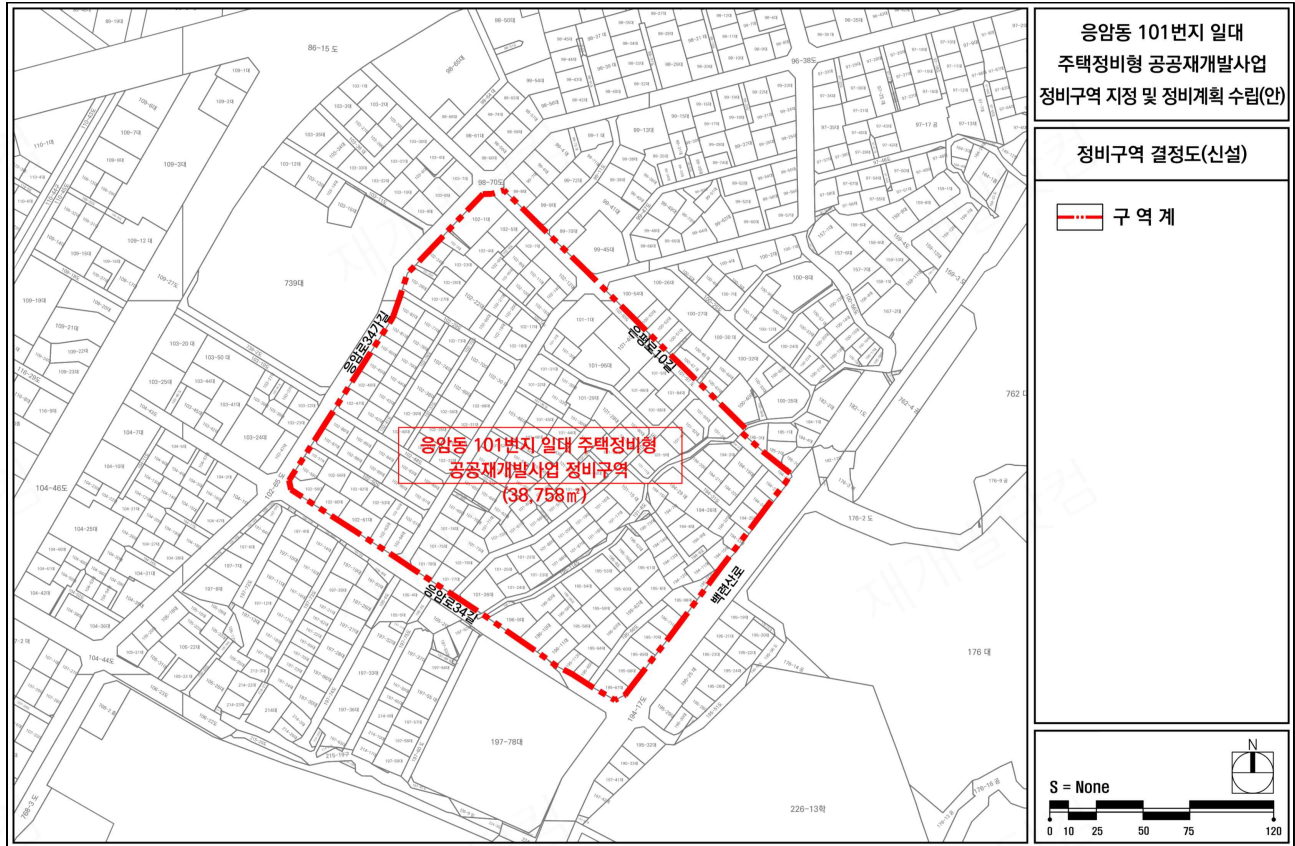
-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합니다.

라. 해당 계획 내용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제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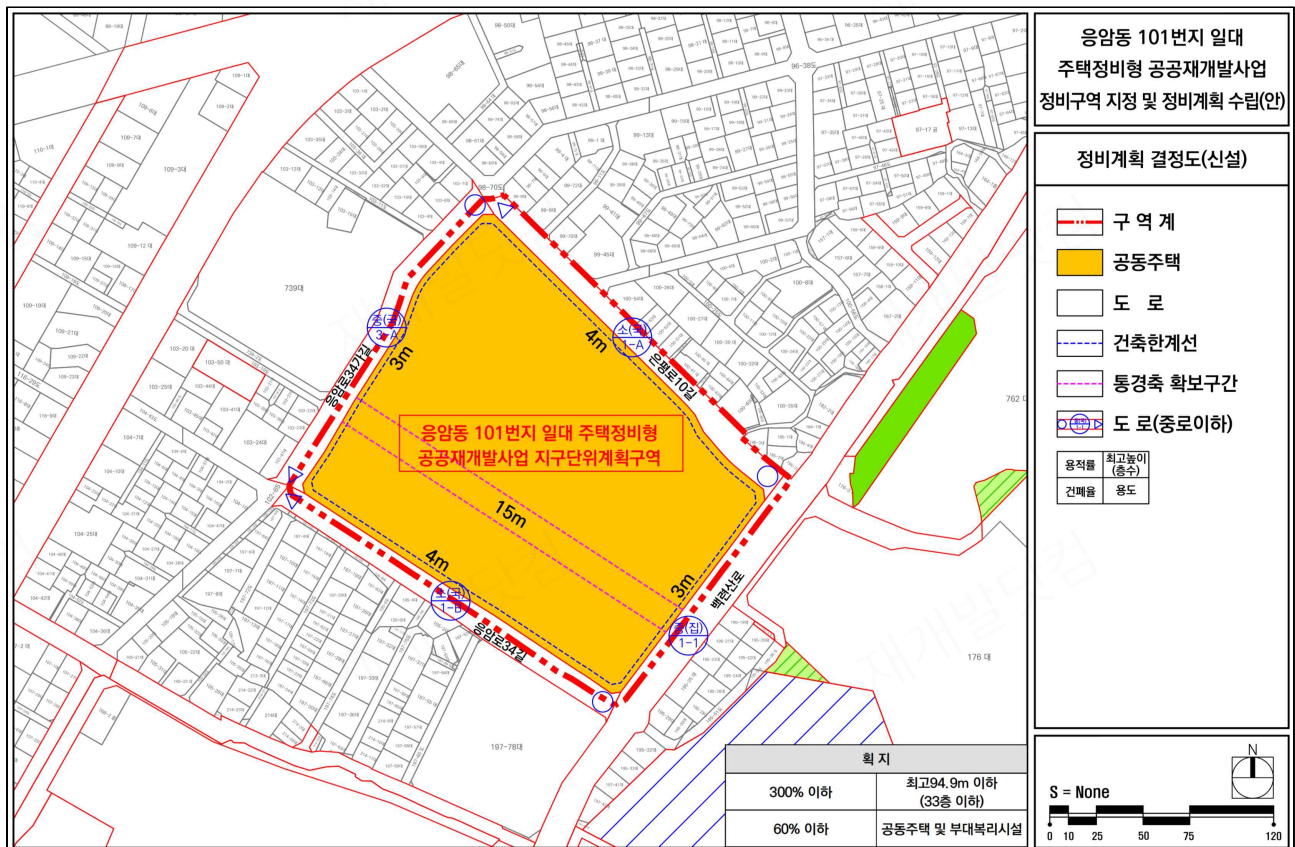
붙임 1. 관련 도면 각 1부.

2. 공람의견서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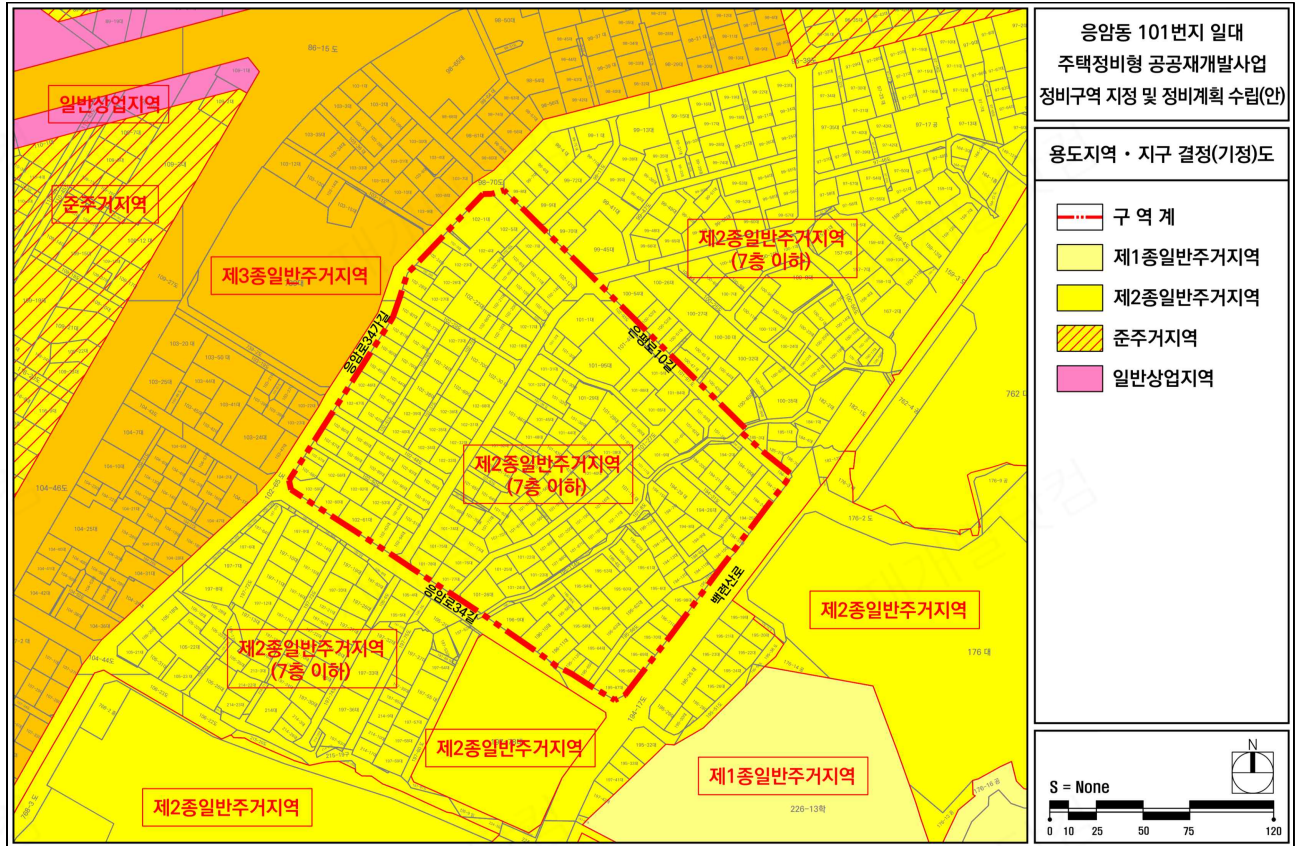
【 정비구역 결정도(신설)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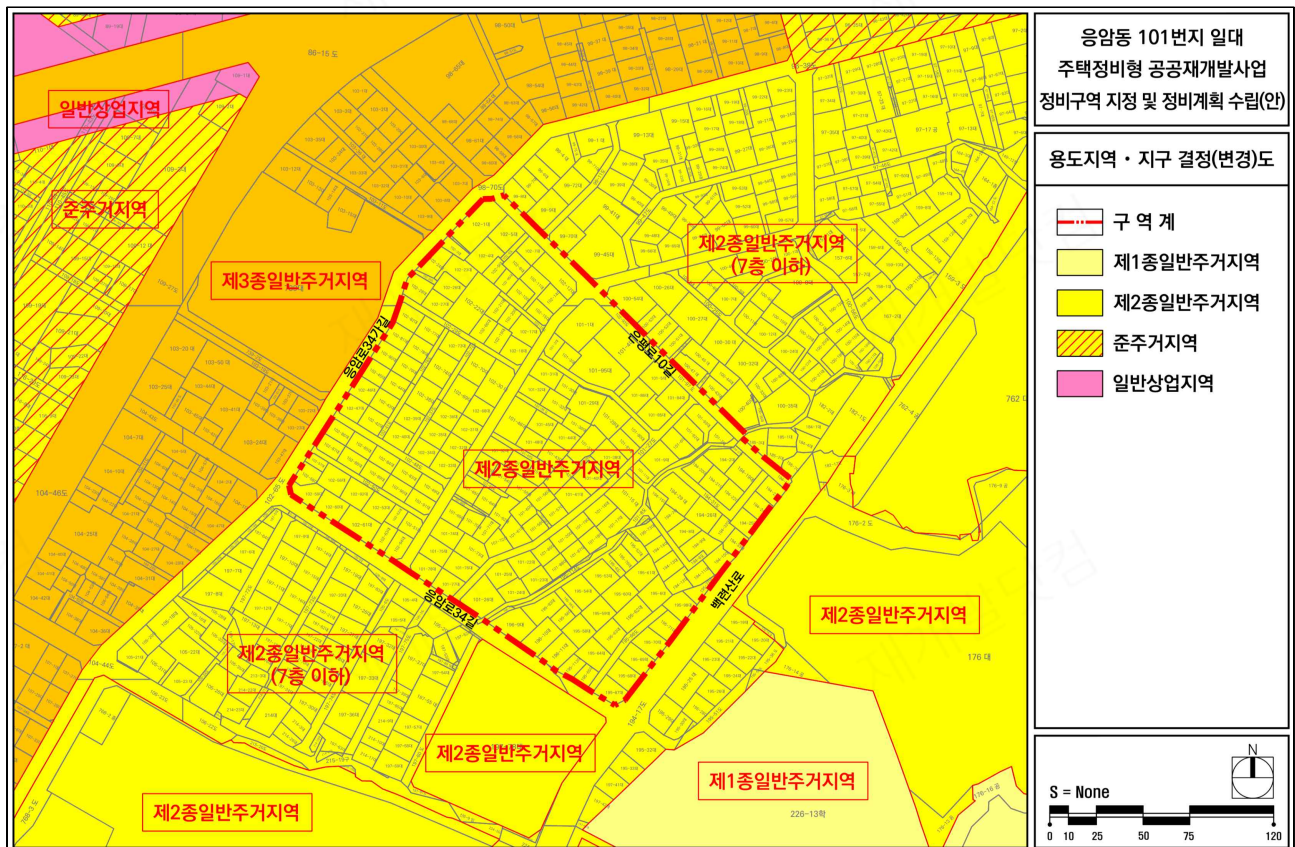
【 정비계획 결정도(신설)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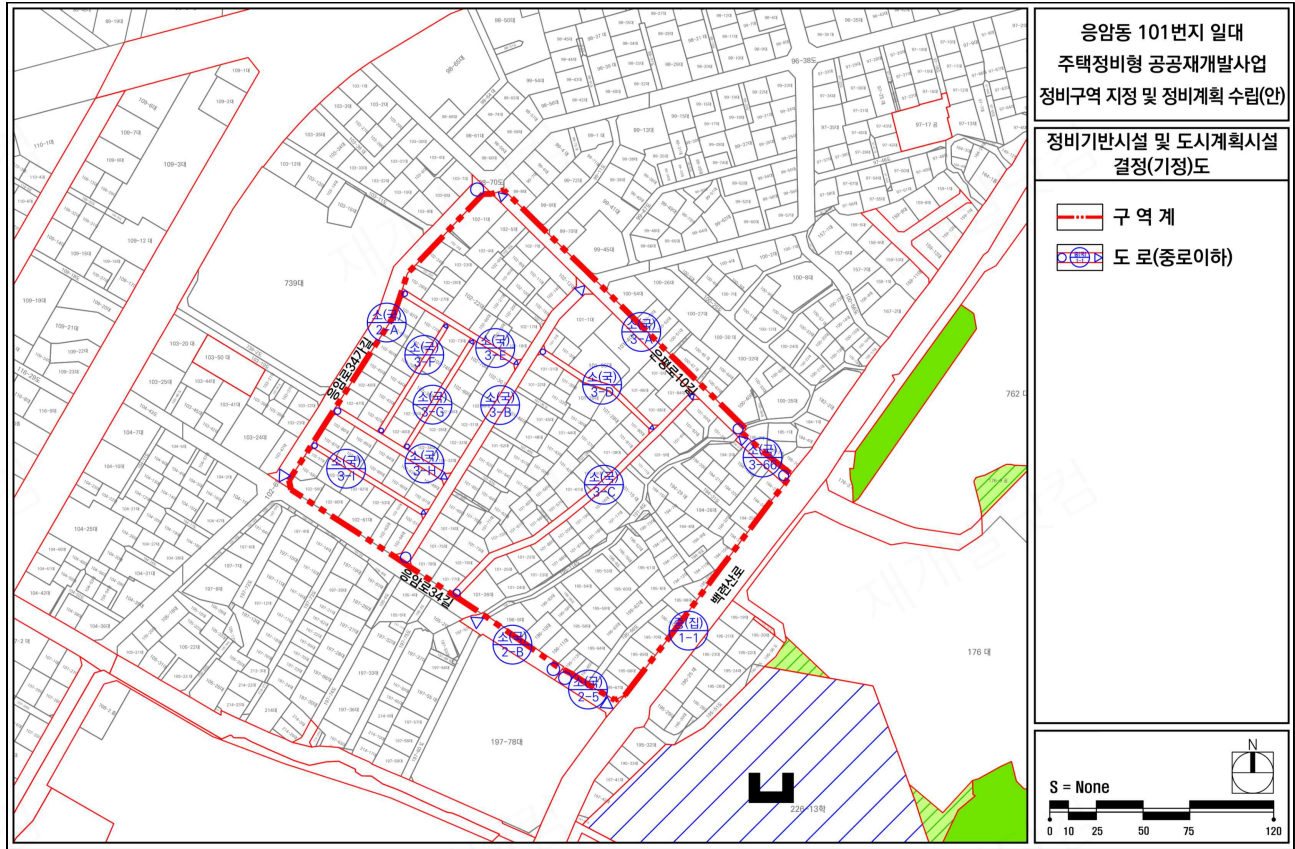
【 용도지역·지구 결정(기정)도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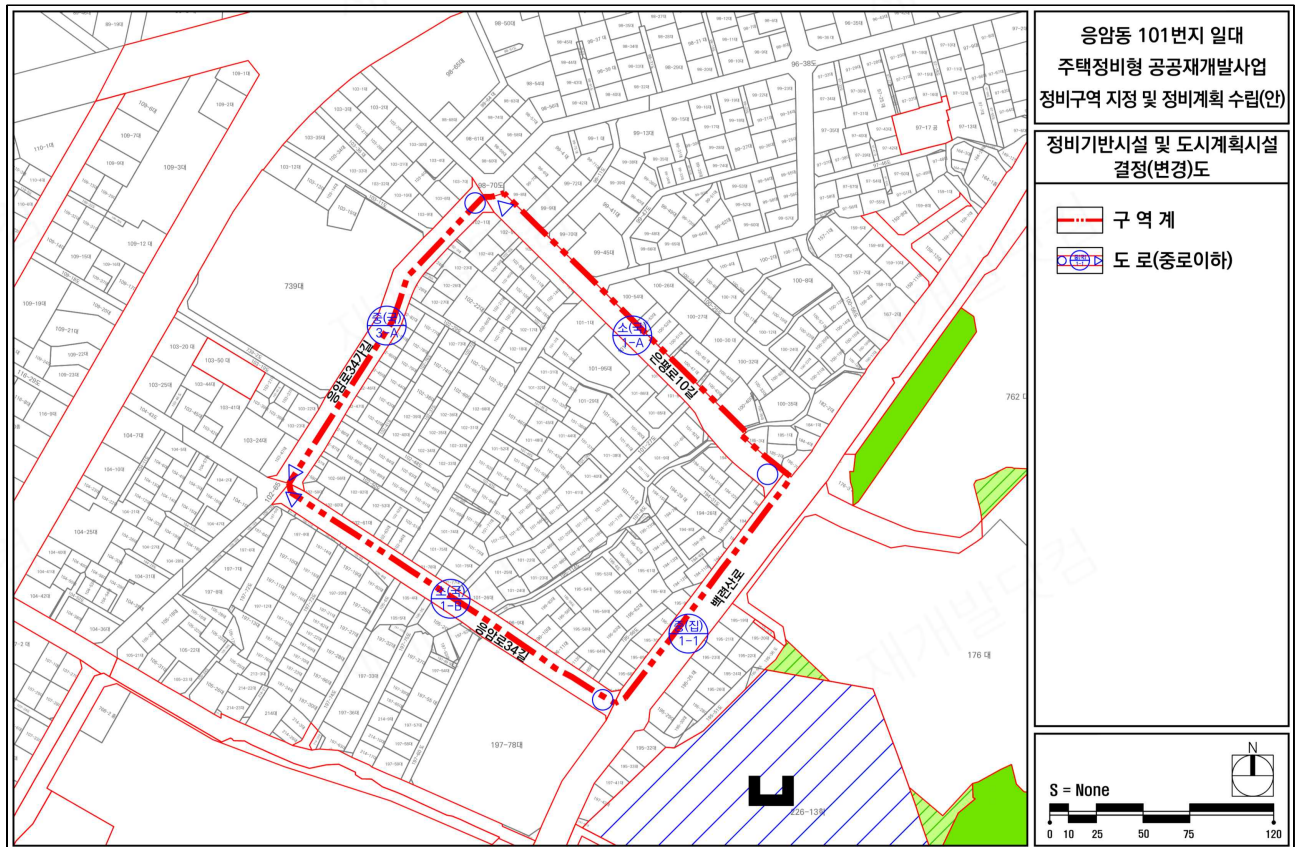
【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도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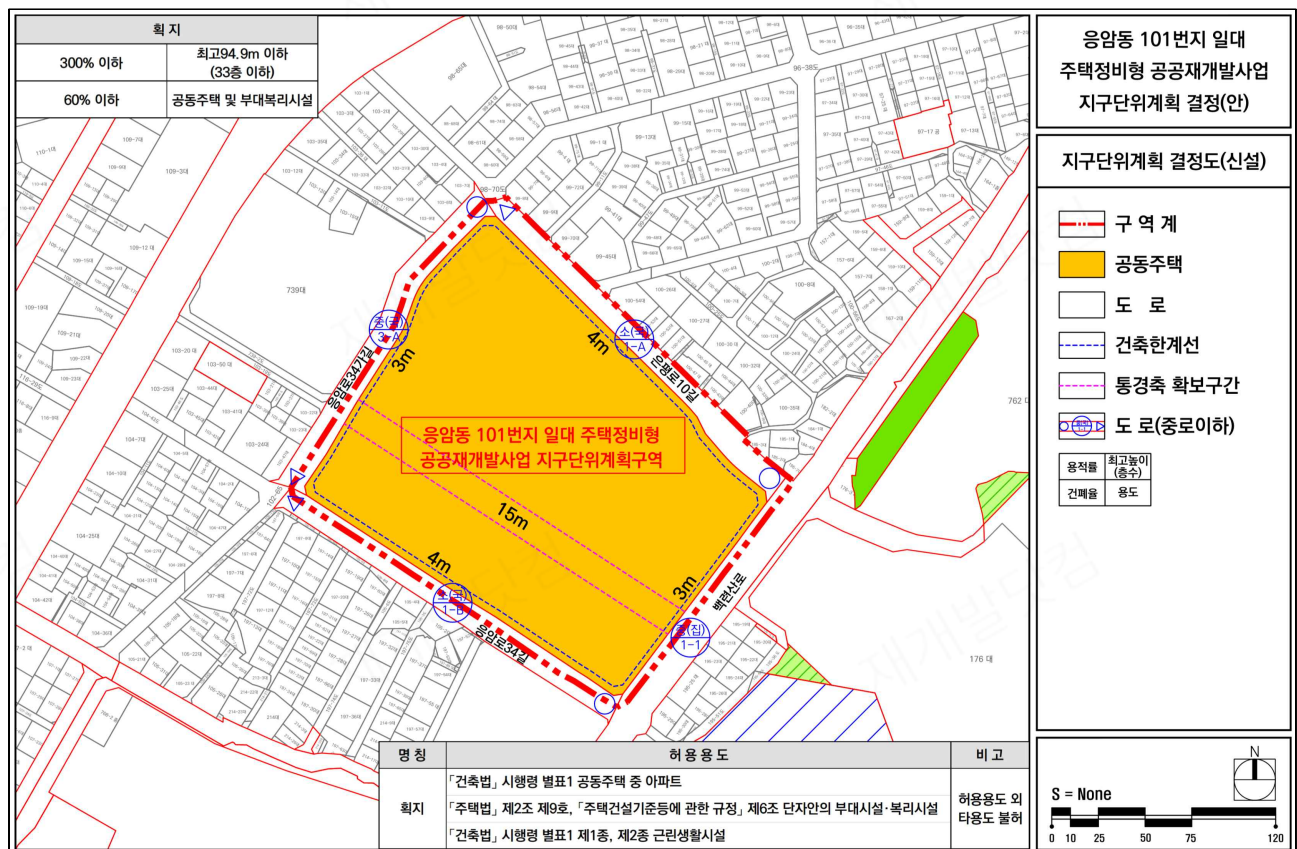
【 정비기본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 】



【 정비기본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】



【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신설) 】



※ 해당 의견서는 열람공고 장소인 “은평구청 4층 정비사업신속추진과”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략 의 견 서

사업명	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			
의견 제출자	성명		생년월일	
	관련 주소 (소유지 주소)	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		
	거주지 주소			
	전화번호			
	주민 유형	☐ 토지등소유자 ☐ 관계인 ☐ 주민 (해당사항에 ✓)		
제 목 (의견요지)				
제출의견				

본인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2025년 2024년

의견제출인 : (서명) 또는 (인)

은평구청장 귀하